인성관 사생생활수칙

제1조(목적) 이 수칙은 사생이 인성관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수칙은 건양대학교 인성관 사생생활수칙이라 칭한다.

제3조(사실배정) 사실배정은 관장의 명을 받아 행정실에서 하고, 이미 배정된 호실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행정직원의 건의에 의하여 관장의 허락을 받아 변경 할 수 있다.

제5조(외부인의 제한) 사생은 관장의 허락 없이 일반학생, 외부인등을 대동할 수 없다.

제6조(공용물 사용)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나 기타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 또는 손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건과 위생)

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.

제8조(금지행위) 사생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외부인에 대한 숙박
2. 남학생은 여학생 학사, 여학생은 남학생 학사의 출입금지
3. 음주, 흡연, 소란, 폭행, 도박행위 일체
4. 전열기, 인화물질,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
5. 실내에서의 취사행위
6. 허가 없이 관내의 모든 기물의 이동
7. 낙서, 부착물의 첨부,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
8. 그 밖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
제9조(일과표) 사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해야 하며 시험기간 중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내 용	개 관	폐 관	점 호	면 회
시 간	05:00	23:30	23:30	09:00 ~ 20:00

제10조(점호)

① 점호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점호는 상담조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.

③ 점호 시 생활 서포터는 인원점검, 환경정리(청소), 전열기 사용 등을 점검한다.

제11조(게시, 광고물 부착)

① 인성관내의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.

② 모든 게시물은 부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인정한다.

③ 관장 및 행정조교가 인정하지 않은 게시물은 불법게시물로 간주한다.

제12조(화기 및 청소책임) 사생은 사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책임을 진다.

제13조(면학분위기 조성) 사생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외박)

① 평일(월~목)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, 부득이한 경우는 외박 1일 전 오후 5시까지 외박계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한다.(무단 외박 시 다음날 부모님께 통보하고 벌점을 부과한다.) (개정 2014.11.7.)

② 3일을 초과하는 장기외박 희망자는 사전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.

제15조(징계) 인성관의 공익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은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① 한 학기 벌점의 합계가 10점 이상이 되었을 경우 다음 학기 입사를 제한한다.

② 벌점이 10점 미만인 경우 벌점은 다음 학기에 누계된다.

③ 벌점 합계가 15점 이상이면 퇴사 조치한다.

제16조(상/벌점) 인성관장은 생활서포터즈의 추천을 받은 관생 중 행실이 바르고 성실한 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하여, 상점을 부여하고 그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다.

① 상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상점	구 분	연번	내 용	점 수
상점 내역	생활태도	1	청소점호 우수방	5점 이내
		2	생활태도 우수자 - 분실물 습득신고, 헌혈증 제출	3점 이내
		3	봉사활동 - 클린웨이 참석, 청소활동 - 선풍기 닦기, 에어컨 필터 닦기	5점 이내
	행사 참여 및 체험활동	4	행사참여 : 각종 공연 및 프로그램	3점 이내
		5	인성관 행사참여 : 소방훈련, 체험활동 등	10점 이내

② 벌점은 다음과 같다.

항	내 용	벌점
1	절도행위, 단체생활 부적응, 집단시위 등 학사 내 생활과 무관한 행동을 하는 자	퇴사
2	학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	
3	주류반입, 사내 음주, 폭행 및 도박행위를 하는 자	
4	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자	
5	사내 기물 및 시설물을 의도적으로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자	
6	점호 후에 학사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자	
7	인화물질(전열기),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자	
8	별도의 허가 없이 외부인 또는 다른 학사 사생을 숙박시키는 자	10점
9	교직원 및 상담조교, 생활 서포터즈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자	
10	학사 내에서 흡연을 하는 자	
11	음주로 인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자 ※ 인사불성(타인부축), 응급처치, 시설물 오염(구토)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	
12	다른 사생에게 점호 대리출석을 부탁하거나 부탁을 받고 대리출석을 해준 자	
13	허가 없이 무단으로 외박한 자 (24:00 이후 입사자 포함)	
14	학사 내에서 반입을 제한한 음식을 먹는 자	
15	별도의 허가 없이 학사나 호실을 변경하는 자	
16	지연 귀사 (23:30 ~ 24:00에 기숙사를 들어오는 경우)	5점
17	타인의 우편물을 가져가거나 열어보는 행위를 하는 자	
18	호실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타인과 공유한 자	
19	낙서, 부착물의 무단게시 및 유인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자	
20	호실 내의 청소 상태가 불량한 자 (수시로 청소 상태 점검)	3점
21	학사 내에서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(고성방가, 소란 등)	
22	24시 이후에 샤워실을 이용하거나 다른 호실에 출입하는 자	
23	면회 시간 이외에 타 학사를 방문하거나 면회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(동반자도 해당)	
24	건전지 방전으로 행정실에서 비상으로 사생관실을 개방하게 한 자	
25	욕실용 슬리퍼나 잠옷을 입은 채로 학사 밖으로 나가는 자	1점
26	학사 주변에서 지나친 애정행각을 하는 자	
27	학사 주변에 설치된 흡연 부스를 이탈하여 흡연을 하는 자	

제17조(퇴사처분)

① 벌점합계가 15점 이상이면 관장은 사생을 퇴사 처분한다.

② 자진퇴사 시 퇴사 1주일 전에 퇴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입사취소 및 퇴사자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개강 이전에 입사를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.
2. 벌점에 의한 퇴사와 강제퇴사자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.(개정:2016.11.10)

입사일	1/4	2/4	3/4
환불금액	3/4	2/4	1/4

※ 3/4이상 : 환불 없음

제18조(식권이용) <신설 2014. 11. 7>

① 입사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1일 1식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식권사용은 자율적으로 하되 환불과 이월이 가능하며, 식당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(3,200원=>3,000원). 단, 환불은 학기말 퇴사시 접수를 받도록 한다. (개정:2016.11.10)

부 칙

이 수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수칙은 199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수칙은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수칙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수칙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